

99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

의안번호	제328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의년월일 : 2000. 5. 3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회의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

□ 내 용

- 99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

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부천시의회	시 의 원	홍 인 석	○ 기획재정위원회 위원
정길영회계사사무소	공인회계사	정 길 영	○ 95~98.부천시결산검사위원
박해올회계사사무소	"	박 해 올	○ 97, 98.부천시결산검사위원
이기진세무사사무소	세 무 사	이 기 진	○ 세무대학 졸업
시장추천자		이 원 재	○ 95~98.부천시결산검사위원

□ 참고사항

관 련 법 규

- 지방자치법
 - 제125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이하생략)
- 지방자치법시행령
 - 제46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94. 7. 6>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94. 7. 6>
 -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-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 - 제2조(위원의 정수) ①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.
 - 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장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 - 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 - 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 (이하생략)
 - 제6조(대표위원)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 (이하생략)